

시민·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점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한인임

노동환경건강

연구소 &

일과 건강 연구원

들어가며

2017년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한국사회의 3대 문제점을 반토막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름 아닌 교통사고사망률, 산업재해 사고사망률, 국민자살률이었다. 이 지표들이 대상이 된 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바로 OECD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불명예이다. 1996년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거의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지표들이다. 교통정책이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업용 차량 사고(과로 등이 원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높은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추락·끼임·부딪침, 작업절차 무시, 2인 1조 작업 무시 등이 노동자 사고 사망의 원인이다. 빈곤과 불평등, 억압과 괴롭힘 등이 국민자살의 원인이다.

이 지표들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보다는 기계중심, 안전보다는 이윤중심,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생명은 경시되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문화성장을 통한 글로벌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 10위권 수준의 GDP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그룹(30-50클럽, 대한민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7개국)에도 포함되어 있다. K팝이나 한류는 또 어떠한가. 국가의 덩치와 인기는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소외되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2021년 1월 8일, 임시국회의 마지막 통과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시민사회·노동조합 운동영역에서는 근래 보기 드문 성과였다.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월호 사태에 직면하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높아갔다. 이 동기가 되었던 법이 바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이었다. 이 법의 배경이 된 것은 1987년 엔터프라이즈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19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간단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영국의 경우 사건 발생 20년 만에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 뒤 7년, 사회 의제화를 시작한지 15년 만이다.

영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보다 더 늦게 제정된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한국이 OECD에 가입하던 시기부터 산재사망에 있어서는 1위였다는 점, 세월호 참사 이후 더 큰 피해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 2020년에도 ‘이천참사’가 여지없이 재발되었다는 점 등은 좀 더 빨리 제정되었어야 했을 법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그러나 결국 제정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대상이 아니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근로기준법 또한 마찬가지다.) 법률이지만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은 제정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노동자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과 일하는 사람의 중대재해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다단계 하청 노동자, 심지어 외부에 있는 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도 원청의 직접적인 지배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별 사업주에 대한 의무와 원청의 의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적시하였다. 공무원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 경우도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다. 또한 시민중대재해와 노동자 중대재해의 경우 모두 행위자(책임자)개인에 대한 처벌과 법인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에 더하여 1인 이상의 사망(질병, 사고 모두 대상), 다수의 질병이나 부상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 사망의 경우만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과 노동자

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노동자·시민에게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경영자에게 있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소위 하한형이 도입된 것이다. 이 경우 법인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피해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을 사항 중 강력한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질병’에 대한 접근이다. 시행령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법률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질병사망도 이 기준을 따르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은 매우 광범위하다. 가장 많은 것이 ‘뇌·심혈관계질환’이고 이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이 ‘자살’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수가 연간 5,000명에 이른다(직업을 가진 국민 중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는 연간 약 5,200명이다). 이들 자살자들은 정말 업무관련성이 하나도 없을까. 직장 괴롭힘, 성과 압박, 평가,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은 자살을 부추기는

조문	제정법 주요내용	해설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민은 물론이려니와 ‘종사자’라는 표현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도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공무원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 경우도 해당 -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
중대 산업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사고와 질병(자살 포함)을 모두 포함 대통령령에서 질병 유형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만 처벌하지만 본 법률에서는 부상과 질병도 처벌 대상
중대 시민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시민 또한 사고와 질병 모두 처벌 대상이 됨
원청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자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특고나 다단계 모든 하청까지 대상. 사외하청 중에서도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를 포괄 - 원청이 필요 조치를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처벌
경영 책임자 처벌	-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과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위반 시는 각 항의 50% 가중 처벌	- 산업재해·시민재해 동일 적용, 하한형 도입
법인 처벌	사망은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은 10억 원 이하 벌금	- 산업재해·시민재해 동일 적용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도입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일부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물질로 인한 질병으로 대통령령에서 한정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남아 있는 과제를 넘어서야 한다

내년이 되어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제정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나 적용유예가 된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민·노동자 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또한 전체 노동자 사고사망의 3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문제는 아예 빠져 있다. 적용유예기간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국민이 연간 2만8천 명에 달한다. 모두 소중한 하나하나의 목숨이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연인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5인 미만 노동자의 사망에는 사업주가 책임이 있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숨에도 규모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소사업장 사업주는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 하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영역이 있다. 바로 인·허가권을 가진 책임공무원 집단이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시설 붕괴로 수련회를 갔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진 사실은 위·변조된 건축허가신청서를 경주시청 측에서는 ‘모르고’ 허가를 냈다고 한다. 또한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준공허가’까지 내주었다. 관할 관청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해도 너무나 처사이다.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외부 감리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문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서는 책임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향후 ‘법 개정’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 많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이다. 노동자·시민은 항상 피해를 입었을 때 권력기관의 불공정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와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 피고가 대기업일 경우 무조건이다. 최근 가슴기살균제 관련 법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많은 전문가와 피해자 집단은 재판부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1천 명의 사망자와 7천 명의 피해자는 그렇다면 조작·날조된 것인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와 관련해 피의자 16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다. 사망 20개월 만이다. 이미 2019년 9월 국무총리실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적시한 이후 1년 만이다. 검찰이 이렇게 뚝을 들인 이유는 사회의 분위기를 보아가면서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려는 의도였다. 앞으로 노동·시민사회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시민 재해에 대해 어떤 형태의 수사와 기소,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한다. 매 사건을 면밀히 기록해야 한다. 허투루 법을 무력화 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글을 나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족·피해자 가족의 목숨을 건 투쟁, 노동·시민사회의 총체적 결합, 노동자·시민 재해에 긍정적으로 바뀐 언론의 태도, 21대 새로운 국회의 적극적 변화 등으로 근래에 보기 힘든 큰 성과물로 탄생했다. 물론 없던 상황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열렬한 국민적 지지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그러나 ‘K-불평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노동자·시민의 삶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노동자·시민의 안전보건 또한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열악한 집단, K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집단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관심이 필요하다.